

|공공정책포럼|



■ 제48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개요

- 주 제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 일 시 2016년 11월 4일(금),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A(1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송대희 총장
 - 08:00~08:40 주제 발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08:4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6년 11월 4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A(1F)에서『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을 주제로 공공 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48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회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 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요즘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김영란법이 10년 전에 도입이 되어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다면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 요약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이고 김영란법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 공식 명칭은 아니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요점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호텔도 영업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음식점, 화훼농가 등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처 예기치 못한 피해입니다. 경기진작을 위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들의 공직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 들어진 법입니다. 그 단면에 이 법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어

오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있으면 명백히 거절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직자 보호법이기도 합니다.

이 법이 나온 배경을 보시면, 공무원과 국민 대상으로 ‘공직사회가 부패한가?’라는 조사를 지난 몇 년간 해보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각각 공무원과 국민에게 물어본 것인데 큰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57.8%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무원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자들은 관행이라고 보는 부분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하는 인식 차이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면 부패한 것이 됩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시면 우리나라 168개국 중에 37위입니다. 우리나라 GDP 수준을 봤을 때 이 순위는 많이 뒤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이 탄생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할 때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직자 등이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학교와 언론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언론사는 기업체라서,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언론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바는 없지만 언론이 대가 없이 받던 협찬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협찬 이외에도 언론계에서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비용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금액이라 문제가 됩니다.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고 협찬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언론사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보완책이 더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분들은 약 4만개 기관에 약 400만명 정도이고 공직자들과 이해관계자들까지 다 본다면 결국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이 기본 인맥 질서인데 이런 것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기존 인맥을 가지고 부정한 청탁과 부정수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은 1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청탁인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위, 권한 등을 남용하는 경우가 부당청탁에 해당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집 짓게 해달라고 하는 것, 또 요즘 문제되는 학점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이 취업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않고 학점을 달라고 할 때 담당 교수가 수업에 오지 않은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줬다면 교수님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법이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씨랜드 사건입니다. 19명의 어린이가 운명을 달리한 이곳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건물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어린이가 머물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담당 이모계장은 부정 청탁을 받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전 사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재를 올렸으나 결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씨랜드의 인·허가와 행정기관의 부실한 감독과 점검은 겹은 돈 거래의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청탁금지법」이 그때 있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속기관장, 수사기관, 저희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이라고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지 예외사유 7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상식적 수준인데 2번이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 특정 행위요구는 은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

시는 부분이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입니다. 이 조항에 관해 언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예외로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선출직 위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 의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입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 방문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직무관련성 여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국회의원이 만났을 때 입법 관련된 일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기업과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직무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포럼도 민과 관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회사는 조금 넘더라도 괜찮습니다. 민과 관이 혼재된 모임이 많은데, 회비로 운영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징의가 9,400건이 넘었고, 올 연말까지 가면 만 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소속기관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시면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게는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 지정/공동수행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품은 청탁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탁은 한 번 거절할 수 있는데, 금품은 거절할 수도 없고 받는 그 즉시 처벌받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금품 등 수수에 해당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다면 역시 안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그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그럴 경우 신

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자식이나 공직자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은 되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됩니다. 그 분들이 단순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겠지만 단순히 받는 것은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예상 외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립학교는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국공립 대학 총장이 40만원이라 교수는 20만원 내외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목적일 경우,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은 3, 5, 10만원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친족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인척은 4촌까지이고 혈족은 8촌까지 괜찮습니다.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물품도 괜찮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설이 되면 누설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해당자 둘만 아는 것이고 내부수사도 둘만의 은밀한 수사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56건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 다른 내부자가 옆에서 보고 신고한 것이고 지금 12건이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법이 있는 줄 모르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지난 달 말에 공사 담당자가 공사 감리업자에게 300만원을 주었는데 감리업자가 그 돈을 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제공자도 처벌받지만 법인도 처벌되게 돼있습니다. 해당 개인이 속한 법인도 처벌되기 때문에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법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수 교육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법인 제재의 중요 증거가 되는데 법인카드를 아예 몰수해버린 중소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대신 업무로 사용한 경비를 사후 처리해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이, 음식을 같이 먹을 때 3만원, 음식을 주었다면 선물이기 때문에 5만원입니다. 저번에 경찰서에 4만 5천원의 떡을 선물한 분의 경우 선물로 되어서 5만원 이하 적용이라 금액은 상관 없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직무관련성이 높아 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조사는 장례식과 결혼식만 포함됩니다. 회갑, 환갑, 돌 모두 포함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10계명입니다. ①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②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③ 학교 선생님에게는 캔커피, 카네이션도 안된다. 저희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처벌가치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는 카네이션 안된다는 것만 너무 부각되었습니다. 답변 취지는 아무리 꽃도 10명, 20명 늘어나고 캔커피라도 매일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 한 잔, 한 번 드리는 게 왜 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습니까. 스승의 날, 졸업식 등에 학생대표가 선생님에게 꽃 하나 주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교육부와 함께 행동강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④ 골프 접대는 안된다. ⑤ 헷갈리면 ‘더치페이’ 한다. ⑥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한다. ⑦ 개인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

용 된다 ⑧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 한다. ⑨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는다. ⑩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 질의응답

안완기/한국가스공사 부사장

Q: 부정한 청탁인지 정당한 정탁인지 그 기준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기관장의 위치가 기관 내·외부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법 이전에는 직원들에게 ‘외부에서 연말쯤되면 승진시켜야 한다는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안한 사람이다’고 했었습니다.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인사팀만의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사람들의 정당한 평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반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소통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A: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사평정을 하면서 승진 대상자도 아닌데 이 사람 승진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훌륭한데 나중에 인사 시 참고해라 이거는 부정청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을 관계에 있을 때(인가를 해야 하거나 평가를 해야 하는 등) 이거 잘 해달라, 잘 봐달라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왜 하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언가 빨리 처리해달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김선영 /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3만원 가지고 얼마든지 드십시오.

Q: 저희 기관은 회사 생활을 할 때 유관기관 즉, 업무관련 기관을 만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현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A: 하지만 원만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원 이하에서는 괜찮습니다.

Q: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고맙다고 식사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기부사업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위해 커피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일체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A: 주는 쪽이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 과정에 음료, 식사는 괜찮습니다. 질문을 듣다보니 「청탁금지법」 포비아란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3만원까지도 괜찮고 차량제공도 괜찮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하시되, 다만 국감 기간 중에 당일에 피관 기관이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벗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될 뿐입니다.

Q: 실제로 어느 정도냐 하면 감독관계로 있는 부처에서 회사에 왔을 때, 제가 출장 가는 길에 역으로 내려주려고 하는데, 동승 절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업무추진비로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차량 제공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하셔도 됩니다. 국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청탁법 때문에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공직자들이 직접 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높이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감사 나왔을 때는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윤왕로 / 한국공항공사

Q: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분들이 함께 테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중에 테니스 대회를 하려고 할 때, 공공기관에 테니스 코트가 넓어서, 그걸 쓰려고 하면 이것은 부정한 청탁입니까? 해당 공공기관에서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A: 테니스장은 무료로 동호인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철 / 기획재정부 공공국 기획관

Q: 한수원 이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청탁금지법」을 보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총리 주재 행사를 하는데, 11시에 장들과 행사를 하고 오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오찬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 사실 저희가 이러한 소극적 해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주에 30여 가지 허용되는 걸 언론에 배포했으나 요즘 사회적 이슈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진행 중인 인허가 또는 수사 등에 관련해서 대접받지 말라는 것이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은 괜찮습니다. 공식행사를 만들면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정기 / 한국광물자원공사 기획본부관리장

Q: 현재 권익위에 질의를 한 상태이나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가 해외사업을 하다보니 국회와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해외사업을 이해시키고자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을 공사 예산으로 초청하여 해외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설명회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특정 관할 국회의원 및 보좌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안 됩니다.

김갑순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Q: 학회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후원을 받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후원으로 심포지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등록(기재부)되어 있습니다만, 후원 단체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부 TF팀에서 말씀해주신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국공립단체들의 기업 협찬 문제가 있어서 허용하는 방안을 문화체육부와 강구중에 있습니다. 학회는 공직단체는 아니지만 몸담고 있는 회원들이 공직자일 뿐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익위도 행사를 할 때 학회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학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마구 돈을 받는 경우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공직단체가 아니라서 청탁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주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이

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학교, 문화예술 분야는 재검토 중입니다.

마무리말씀

송대희 / 총장

법 시행 초기에 질문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이다 보니 동창, 같은 핏줄 및 배경으로 시작해 끼리끼리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누락될 때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를 법이 고쳐 보겠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향후 1, 2년 시행과정을 두고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고비를 넘어야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의한 투명한 신뢰받는 사회가 된다면 아시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가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KDI에 있으면서 개발도상국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많은 국가들이 부정부패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초기지만, 이것이 잘 정착된다면 분명히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보호를 위한 법임을 명심하고. 법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KDI**